

-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박진형 의원 외 10명

나. 의안번호 : 제779호

다. 제출일자 : 2015. 10. 30.

라. 회부일자 : 2015. 11. 4.

2. 제안사유

- 서울시 택시요금의 소액 결제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범위를 택시 위법행위 관련 행정처분 대상자 등 일부 운수종사자 및 운수사업자에 대해서 제한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택시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택시요금 10,000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수수료의 지원에 관한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지원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(안 제4조제1항)

나. 시장은 카드 수수료 지원 및 제외 범위 등의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

택시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함(안 제4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 없음

나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15.11.11.(수)~18(수)

○ 의 견 : 의견 없음

다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서울시장(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) : 원안 동의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장이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함에 있어 택시운송사업자의 시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범위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지원 및 제외 범위를 운송사업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택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 의견

- 서울시는 현행 조례에 따라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카드결제 거부감을 줄여 카드결제 활성화 및 택시이용 시민편의 증대와 택시업체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
- 서울시는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카드단말기 장착비·관리비·통신비·수수료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총 1,012억 2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, 이중 소액 카드결제수수료는 총 287억 7백만원에 이르고 있음

〈택시 카드결제활성화 및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예산〉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합 계	'11년 이전	'12	'13	'14	'15
합 계	101,224	36,302	15,200	17,916	17,106	14,700
장착비	9,300	9,300	-	-	-	-
관리비	43,466	22,806	7,865	5,329	4,916	2,550
통신비	21,401	4,196	4,488	4,177	4,290	4,250
수수료	28,707	-	5,000	7,907	7,900	7,900

최근 5년간 유형별 택시민원을 살펴보면 승차거부, 불친절, 부당요금, 도중하차, 사업구역 외 영업, 장기정차 여객유치, 합승, 기타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 승차거부, 불친절, 부당요금 민원이 전체 민원의 8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

〈최근 5년간 유형별 택시민원 현황〉

연 도	합 계	승차거부	불친절	부당요금	도중하차	사업구역 외 영업	장기정차 여객유치	합 승	기 타
2015 9월말	18,144 (100%)	5,600 (30.9%)	6,234 (34.4%)	3,522 (19.4%)	894 (4.9%)	625 (3.4%)	285 (1.6%)	95 (0.5%)	889 (4.9%)
2014	28,056 (100%)	9,477 (33.8%)	8,760 (31.2%)	5,121 (18.3%)	1,404 (5.0%)	1,047 (3.7%)	751 (2.7%)	189 (0.7%)	1,307 (4.7%)
2013	37,870 (100%)	14,718 (38.9%)	10,748 (28.4%)	4,969 (13.1%)	1,761 (4.7%)	1,629 (4.3%)	2,150 (5.7%)	263 (0.7%)	1,632 (4.3%)
2012	39,962 (100%)	16,699 (41.8%)	11,371 (28.5%)	4,932 (12.3%)	1,803 (4.5%)	1,532 (3.8%)	1,890 (4.7%)	260 (0.7%)	1,475 (3.7%)
2011	39,280 (100%)	15,482 (39.4%)	11,036 (28.1%)	5,116 (13.0%)	1,895 (4.8%)	1,459 (3.7%)	2,557 (6.5%)	335 (0.9%)	1,400 (3.6%)

- 비록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민원발생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운수종사자와 그렇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내에 지원근거와 함께 제한 근거를 함께 마련하는 것은 예산 지원의 효율성과 택시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필요할 것임
- 또한,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예산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도 보다 친절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원발생 최소화와 함께 택시서비스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

- 다만, 택시민원에 대한 서울시의 처분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특정인 2명이 매년 택시민원의 1, 2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과징금은 단 한 차례도 부과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 처분은 단 1회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불문, 경고, 지도교육 등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택시민원에 대한 서울시의 처분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

따라서, 동 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서울시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지켜나감으로써 택시민원에 대한 처분이 보다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

- 서울시장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‘원안 동의’ 의견¹⁾을 제출하였음

1) 택시물류과-34839(2015.12.16.)